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당사가 수탁하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97-2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를 실시합니다.

1. 공매대상 물건(총 1개 물건)

물건번호	공매부동산의 표시	비고
1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97-2번지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	전체 일괄매각 (건물명 : 바다유하우스)

2. 공매일시 및 공매예정가격

- 온비드 공고 상 첨부된 공매예정가격 참조

3. 공매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4. 공매방법 : 일반경쟁입찰(단독응찰도 유효)

- 1) 본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온비드'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 2) 공매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하며, 공매 건별 일괄입찰만 가능합니다.
- 3) 동일조건인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온비드"의 개찰일은 입찰일 익영업일이며, 수의계약에 선행하여 낙찰된 경우 수의계약은 금액과 관계없이 자동취소되며, 계약보증금 입금액은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합니다.
- 5) 공매 유찰시 다음 회차의 공매 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직전 회차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 수납접수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10회차 공매까지 유찰될시 10회차의 공매 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 수납접수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수의계약은 "온비드" 홈페이지가 아닌 당사에 내방하여 체결하여야 함.)
- 6) 상기 공고된 공매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전체 차수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 예금계좌로 입찰일 익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1) 낙찰자는 낙찰 후 5영업일 이내에 당사를 내방하여 당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5영업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2)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대상물건의 매매계약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 후 관계법령에 의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10%(입찰보증금 대체 가능),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잔금 90%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상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위 계약금 및 잔금 납부시점에 그 비율(계약체결시 : 10%, 잔금 지급시 : 90%)에 맞추어 매매대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부동산거래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매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포함) 또한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7. 소유권 이전

- 1) 입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적·법률적 하자 및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단, 공매목적물에 대한 체납된 재산세 등 당해세가 있는 경우 매도자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 2) 공매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위탁자(또는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탁자에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무유예결정(워크아웃개시)이 있거나 공매물건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매매완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부연하면, 잔금 지급일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 중지 또는 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이 제기되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는 경우 및 매매완결에 장애가 될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함)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지급한 매매대금(이자금을 제외한다)의 반환 이외에 매수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또는 비용의 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3)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4)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등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매수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공매물건과 관련한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6) 공매물건에 존재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 7) 공매목적물에 대한 명도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부연하면, 공매목적물의 명도 관련 일체의 법적 분쟁 및 민원 등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수탁자는 위 명도와 관련하여 매수자에게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8)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법률관계의 정리, 명도, 철거, 수거, 인도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9) 매수자는 잔금을 전액 납부하고, 본 공매공고 및 기타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매수인의 의무(잔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를 이행완료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1)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①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
 -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등을 포함한 매각부동산에 존재하는 일체의 권리상의 하자 및 제한
 -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 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자의 담보책임
- 2) 공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제세공과금(단, 공매목적물에 관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납부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수탁자에 의해 신탁재산에서 납부된 제세공과금은 제외함), 준조세, 이행강제금, 각종 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원, 관리비, 인도 및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권 등) 및 공매목적물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정리는 매도자에게 부과된 것이라도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이

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공매목적물에 대한 체납된 재산세 등 당해세가 있는 경우 매도자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중

- 3)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자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임대차보증금 반환 포함)을 승계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목적물의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므로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명도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본 물건에 대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확인은 전입세대 열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매수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매공고일 기준 공매목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가 결정되었고, 아래의 주택임차권등기를 포함하여 공매공고일 현재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임차인에 한하여는 매도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입니다.(단, 해당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의 대상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외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명도 책임 등)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임3151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임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임3202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임3273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임67

- 4) 공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관리비(공용부분, 전용부분 포함)는 매도자에게 부과된 것이 라도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공매목적물에 관한 관리비 현황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전에 매수자가 직접 파악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5)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사가 공매기일에 교부하는 “신탁재산공매입찰참가자 규칙”의 내용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 6)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7)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8) 본 공매 공고에 첨부된 임대차 내역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수집·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그 내용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의 존재 여부, 임대차 조건(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 권리관계 일체에 대하여는 매수희망자 책임 하에 직접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게 귀속됩니다. 수탁자는

본 임대차 내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2) 공매공고(열람서류 포함)는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3)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매물건의 원인채무 변제로 인하여 공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대상 물건 세부 현황, 공매관련 기타자료 및 공매변경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공매관련 세부사항에 관한 문의 ■ ■ ■

홈페이지 : <http://www.koramco.com/ko/pubsaleList> → 공매정보

문의처 : 신탁 사업추진TF팀(02-2251-7482)

2026. 04. 02.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아이콘 삼성)

[첨부]임대차 내역

(단위 : 천원)

순번	호실	보증금	임대료	비고
1	101 호	1,000	300	
2	102 호	30,000	550	
3	103 호	10,000	530	
4	201 호	20,000	550	주택임차권등기
5	202 호	30,000	550	
6	203 호	10,000	530	
7	204 호	40,000	450	
8	205 호	30,000	600	
9	301 호	30,000	500	주택임차권등기
10	302 호	80,000	200	
11	303 호	20,000	450	
12	304 호	40,000	450	주택임차권등기
13	305 호	30,000	600	
14	401 호	170,000	0	
15	402 호	150,000	0	
16	403 호	160,000	0	주택임차권등기
17	404 호	160,000	50	
18	405 호	150,000	0	
19	501 호	180,000	0	
20	502 호	150,000	0	
21	503 호	20,000	600	
22	504 호	140,000	100	
23	505 호	160,000	0	주택임차권등기
24	601 호	170,000	0	
25	602 호	140,000	50	
26	603 호	50,000	150	
27	604 호	120,000	100	
28	605 호	150,000	0	
29	701 호	40,000	600	
30	702 호	10,000	550	
합 계		2,491,000	8,460	